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